

[2018년 연말정산 유의사항]

1.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

2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?

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(가족관계부 제출)의 소득공제내역을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고, "소득공제증명서류"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입니다.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하여 발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단, 근로소득자가 성인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(홈택스에서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함). 현재,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 받고 있으며 **2018년 1월 15일부터**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3. 국세청에서 자동적발 되는 항목

- ①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의 배우자 공제
- ② 맞벌이 부부가 자녀 및 부모의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공제한 경우
- ③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으로 공제한 경우
- ④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한 경우
- ⑤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대상 지출액을 국세청 내용과 상이하게 공제하는 경우
(단, 국세청자료의 내용이 오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내용대로 공제 가능함)
- ⑥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
- ⑦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
 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, 배우자명의 주택이거나 차입금인 경우
 -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
- ⑧ 허위기부금 영수증 과다공제 주의

[2018년 연말정산 공제요건과 제출서류]

구 分		공 제 요 건	공 제 금 액	제 출 서 류 및 비 고
인 적 공 제	기본공제	*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- 연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 만원) - 직계존속, 형제자매 60 세이상(1958년 이전 출생) - 직계비속 20 세 이하(1998년 이후 출생) - 장애인의경우 연령 제한없음	1 인당 150 만원	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세액신고서에 신청 기본공제대상자판단은 12/31 기준
	추가공제 (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)	장애인(연령은 불문하나 100만원 소득요건은 적용됨) 경로우대자(1948년 이전 출생)	1인당 200만원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	장애인증명서(중병, 중풍, 암, 등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) 소득세액신고서에 신청 자동반영
		부녀자공제(근로소득금액이 3 천만원 이하)	여성근로자 1 인당 50 만원	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 상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부녀자 소득세액신고서에 신청
		한부모소득공제	한부모자 1 인당 100 만원	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안함 소득세액신고서에 신청
연금보험료공제		국민(공무원등)연금보험료	전액(본인부담금)	자동반영
종 합 소 득 공 제	보험료 공제	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	전액(본인부담금)	자동반영
	주택자금공제	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%	합계 300 만원 한도	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, 무주택확인서
		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%		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상환증명서류(계약이체증빙)
		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100%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이자상환액의 100%	누적합계 500 만원 (또는 1,500 만원, 1,800 만원미만) (600 만원) 한도	장기주택 저당차 입금이자상환증명서,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, 개별(공동)주택가격 확인서
	이월기부금	2013.12.31이전 기부금 지출액	공제한도 내 이월기부금	기부금명세서
기 타 소 득 공 제	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공제	공제액=(①+②+③-④+⑤) ①전통시장, 대중교통 이용분×40% ②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×30% ③신용카드 사용 분×15% ④(총급여액×25%)×15%(30%) ⑤추가공제율 사용분×10%(20%)	한도 : Min[300 만원, 총급여액×20%] +Min[한도초과액, 전통시장×30%, 100 만원] +Min[한도초과액, 대중교통×30%, 100 만원]	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지로 납부확인서, 등
	장기집합투자증 권저축공제	2015년 12 월 31 일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총급여액 8,000 만원 이하 근로자(능특세납부)	소득공제액: Min[①, ②] ①납입금액×40% ②240 만원	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증명서
	개인연금저축	2000년 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	납입액의 40%(72만원 한도)	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
	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	2018년 12 월 31 일까지 벤처기업등에 본인명의 투자액	소득공제액: Min[①, ②] ①투자액×10%(벤처기업: 100%, 50%, 30% %) ②종합소득금액×50%	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
	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	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	Min[우리사주조합출연금, 400 만원]	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
	고용유지중소기 업 근로자 소득공제	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	소득공제액: Min[①, ②] ①(직전 임금총액-당해 임금총액)× 50% ②1,000 만원	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문
	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	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	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: 500만원 4천만원~1억원: 300만원 1억원 초과: 200만원	공제부금납입증명서
소득공제 종합한도		주택자금공제+주택마련저축+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+투자조합출자+신용카드등사용금+우리사주조합출자금+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총 연 2,500만원		

구 분		공 제 요 건	공 제 금 액	제 출 서 류 및 비 고
세 액 감 면	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세액감면	대상: 35세 이하 청년, 60세 이상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 취업 (2018.12.31까지)	중소기업의 취업일부터 3년간 70% 세액감 면(한도 150만원)	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
	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	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(2018.12.31 이전)부터 2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	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50% 세액감면	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감면신청서
	핵심인력성과 보상금 세액감면	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	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의 50% 세액감면	중소기업핵심인력보상기금수령액 소득세감면신청서
세 액 공 제	근로소득 세액공제	산출세액 130 만원 이하:55% 산출세액 130 만원 초과분:30%	공제한도: 74 만원~50 만원	자동반영
	자녀세액공제	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	-1 명: 15 만원 -2 명: 30 만원 -3 명 이상: 30 만원+2 명초과×30 만원	소득세액공제서 신청
		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	(자녀수-1명)×15만원	소득세액공제서 신청
		출생·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음	첫째 30만원/둘째 50만원/셋째이상 70만원	소득세액공제서 신청
	연금계좌공제	본인명의 연금계좌(연금저축+퇴직연금)에 납입한 금액	[①, ②]X12% (총급여 5,500 만원이하:15%) ① Min[연금저축, 400 만원(총급여 1 억 2 천만원 초과자 300 만원)]+퇴직연금 ② 700 만원	연금납입확인서
납세조합 세액공제	납세조합가입자	납세조합관련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10%	납세조합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
	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(농특세납부)	1995.11.01~1997.12.31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 위한 차입금이자	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주택등기부등본	
월세액 세액공제	외국납부 세액공제	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	Min[①, ②] ①외국납부세액 ②산출세액×(국외근로소득금액/총근로소득금액)	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
	보장성보험료(생명보험, 상해보험 등)	Min[보험료지급액, 100만원]×12%	임대차계약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	
특별 세 액 공 제	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	Min[보험료지급액, 100만원]×15%		
	의료비세액공제	①본인·장애인-65 세이상자 의료비, 난임시술비 ②기타의 부양가족 의료비	[①+Min(②-총급여 X 3%, 700만원)]×15% (난임시 술비 20%)	의료비지급명세서 또는 의료비영수증, 인경등구입영수증(50 만원이내)
		근로자 본인·장애인	교육비전액×15%	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학교수업용도서구입증명서 교복구입비(중고생 50 만원) 국외교육비(국외유학요건충족)
	교육비세액공제	취학전아동	Min[교육비, 1 인당 300 만원]×15%	
		초·중·고등학생	Min[교육비, 1 인당 300 만원]×15%	
		대학생	Min[교육비, 1 인당 900 만원]×15%	
기부금세액공제	정당, 후원회, 선관위 기부금 ①Min[법정기부금, 근로소득 X 100%] ③Min[우리사주조합기부금, 근로소득 X 30%] ⑤Min[사회복지단체기부금, 근로소득 X 30%] ④Min[종교단체기부금, 근로소득 X 10%]	-10 만원×100/110 -10 만원초과분:15%(3 천만원 초과분 25%) ((①+②+③+④)×15%)(30%)* * 2 천만원 이하분: 15% 2 천만원 초과분: 30%	기부금명세서(영수증포함)	
		13 만원 표준세액공제		
		13 만원 표준세액공제	자동공제	
		13 만원 표준세액공제		
	표준세액공제	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표준세액공제액 13 만원 이하	자동공제	